

공정거래위원회 주요 심결사례

2001. 2. 8. 심결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강산주유소의 석유판매업에 있어서의 공급자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건 (2000구사1513)	강산주유소는 현대정유(주)가 생산하는 석유제품을 판매한다는 표시인이 설치된 강산주유소를 임차하여 이를 소비자에게 판매하여 오던 중, 2000. 9. 27. ~ 2000. 11. 30. 기간 중 S-oil(주)의 석유제품을 현대정유(주)의 석유제품과 혼합하여 판매하면서 자신의 영업장소에 특정 석유정제업자의 상표만을 표시·광고함으로써 소비자가 자신이 판매하는 석유제품의 공급자에 관해 오인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 표시·광고법 제3조제1항제1호 위반	◎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고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전지크기로 작성, 7일간 부착하여 공표토록 함

2001. 2. 14. 심결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롯데쇼핑(주)(마그넷)의 대규모소매점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2000유거1558)	롯데쇼핑(주)은 대형할인점 마그넷을 운영하면서 자신에게 상품을 납품하고 있는 사업자들에 대한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1999. 11. 20.~2000. 11. 1. 기간 중 (주)꽃샘종합식품 등 215개의 납품업체들과 납품금액의 1~4%를 대금지급시 공제한다는 내용의 판매장려금 약정서를 계약기간 중에 새로 체결하고, 2000. 1. 1.~2000. 9. 30. 기간 중 총 4,165백만원을 납품대금 지급시 공제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기간 중에 일방적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여 납품업체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4호위반	◎ 특정불공정거래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2001. 2. 16. 심결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한국자동차폐차업협회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건 (2000단체1291)	한국자동차폐차업협회는 1999. 2. 26. 제11차 정기총회를 비롯하여 지역별로 폐차가격의 협정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과당경쟁방지협약을 체결하고 약속어음 등의 공증, 폐차인수증명서 서식의 차등배부, 전산차적조회 등 업무지원중단, 지도단속요원을 고용한 순회단속, 위반업체에 대한 범칙금 부과 및 각서 징구 등을 수단으로 협약의 이행을 강제하는 등 구성사업자의 폐차가격을 결정·유지	◎ 경쟁제한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자신의 모든 구성사업자에게서 면으로 통지하고 연명으로 1개 중앙일간지 전판에 5단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또는 변경하였고, 2000. 5. 23., 7. 29., 7. 31. 등 3회에 걸쳐 자신의 구성사업자에게 폐차대행업체와의 거래를 제한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전국 폐차시장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여 공정거래법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4호 위반	×18.5cm의 크기로 게재하여 공표토록 함 ◎ 과징금 납부 : 26,400천원

2001. 2. 20. 심결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주)국민은행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건 (2001조일0096)	(주)국민은행은 부당하게 자회사인 국민리스(주)에 대하여 개별정상금리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콜자금을 대여하거나 회사채 및 융통어음을 매입하여 과도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국민리스(주)를 지원하는 행위를 하여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7호 위반	◎ 부당지원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1개 중앙일간지 전판에 3단×10cm의 크기로 게재하여 공표토록 함 ◎ 과징금 납부 : 1,215백만원
한국전기통신공사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건 (2001조일0097)	한국전기통신공사는 1997. 5.부터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분당본사사옥 등 11개 사옥에 대한 관리용역업무를 자회사인 한국통신산업개발(주)에 위탁하면서 1인당 월노동가를 적정수준보다 현저하게 높은 수준으로 하여 용역수수료를 지급하였고, 1990. 1. 한국공중전화(주)와 “공중전화 설치 및 관리업무의 위탁에 관한 협정서”를 체결하여 공중전화 유지·보수 업무를 위탁하고, 1995. 3. 2. 계열회사인 한국통신진흥(주)와 『CATV 전송선로 유지 보수업무의 위탁에 관한 협정서』를 체결하여 자회사인 한국통신진흥(주)에게 CATV 전송망 유지·보수업무를 위탁하면서 월직접노무비를 적정수준보다 높게 적용, 수수료를 과도하게 지급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7호 위반	◎ 부당지원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2개 중앙일간지 전판에 5단×37cm의 크기로 게재하여 공표토록 함 ◎ 과징금 납부 : 30,723백만원
농협중앙회 및 7개 비료제조회사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2001소기1076)	농협중앙회 및 남해화학(주), 신한중합비료(주), 경기화학공업(주), 동부한농화학(주), (주)조비, (주)풍농 및 우림산업(주)등 7개 비료제조회사는 BB비료를 판매하면서 비료포장대, 홍보책자 및 전단지 등에 BB비료에 대하여 “토양을 정밀 분석하여 경작물에 맞도록 시비 처방한 후 제조”, “개인별 주문비료” 등과 같이 “주문자의 토양을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개개의 토양에 적합하도록 제조·공급하는 비료”이기 때문에 “수확량 증대”, “비료대 절감” 등의 좋은 효과가 있다고 표현하였으나, BB비료를 공	◎ 부당한 광고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연명으로 2개 중앙일간지 전판에 5단×37cm의 크기로 게재하여 공표토록 함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급함에 있어서 토양분석을 실시하지 않고 공급하거나, 인근지역의 토양분석 결과를 인용하여 공급하거나 혹은 자신들의 편의에 따라 토양분석 결과와 전혀 다른 비중을 일괄 공급하는 등 허위·과장 광고행위를 함으로써 표시·광고법 제6조제1항 위반	

2001. 2. 22. 심결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주)신세계백화점(이마트)의 대규모소매점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 및 부당담매행위에 대한 건 (2000유거1594)	(주)신세계백화점(이마트)은 자신이 규격, 의장, 형식 및 가격 등을 미리 정해 거래 상대방에게 제조를 위탁하는 하도급 형태로 구매한 자사 브랜드 상품의 납품대금에서 일방적으로 판매장려금을 공제하는 행위를 하였고, 자신의 총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한 코카콜라 제품을 미끼상품으로 내세워 구입원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상당기간 계속해서 판매하여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4호 및 제2호 위반	◎ 특정불공정거래행위 및 부당담매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2개 중앙일간지 전판에 5단×15cm의 크기로 게재하여 공표토록 함
경원통상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2000광고1390)	경원통상은 2000. 1~11월 중 카톨릭신문 등 주간 종교지에 자기가 판매하는 전기매트인 「수맥유해파차단매트」에 대해 광고하면서 객관적 근거 없이 동 제품이 수맥 차단효과가 있으며 각종 질병이나 질병의 범주에 속하는 증상에 대해 치료나 예방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함으로써 표시·광고법 제3조제1항제1호 위반	◎ 부당한 광고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기광고한 1개 주간신문 전판에 3단×10cm의 크기로 게재하여 공표토록 함
(주)쌍커즈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2000광고1566)	(주)쌍커즈는 화상쇼핑몰 가맹사업자를 모집하면서 자기가 실제로 전국 최대규모인 10,000개의 부동산 중개소 유통망을 구축하고 있고, 자기의 업종에 가맹계약하면 연 1억원을 벌 수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 광고를 하여 표시·광고법 제3조제1항제1호 위반	◎ 부당한 광고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1개 중앙일간지 전판에 3단×10cm의 크기로 게재하여 공표토록 함
한국피앤지(주)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2000광고1391)	한국피앤지(주)는 2000. 8~10월 중 여성동아 등 6개 월간지 등에 자기가 판매하는 주방세제인 「조이」에 대해 광고하면서 객관적 근거 없이 동 제품이 예전에 쓰던 것보다 4배의 세정력을 발휘하므로 4배 더 경제적인 세제인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하였으며, 2000. 8월부터 출시된 「조이」제품용기의 표시를 통해 객관적인 비교대상을 명시하지 않고 제품용기 전면에 “1/4”라는 표시를 하면서	◎ 부당한 광고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2개 중앙일간지 전판에 5단×18.5cm 크기로 게재하여 공표토록 함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뒷면에는 1/4만 사용해도 충분하다고 기만표시하였고, 2000. 8. 14.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에서 실시한 세정력시험에서 KS표준지표세제에 비해서는 4배, 시중에 판매되던 기존의 범용세제에 비해서는 2배 수준의 세정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으나, 한국피앤지(주)가 객관적인 비교대상을 명시하지 않고 제품용기에 1/4로 표시하거나 예전에 쓰던 것과 같은 양으로 4배의 세정력을 발휘하는 것처럼 광고한 행위는 일반소비자들로 하여금 기존에 사용하던 범용세제에 비해서도 4배의 세정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인케 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해당하므로 표시·광고법 제3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위반	

2001. 2. 24. 심결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포항종합제철(주)의 부당 지원행위에 대한 건 (2001조기0100)	포항종합제철(주)은 자회사인 (주)승광이 발행하는 전환사채를 부당하게 현저히 낮은 금리로 인수하여 과도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였고, 자회사인 (주)포스에너지에 자가발전 및 산소설비운영을 위탁운영함에 있어 동 위탁운영용역비를 과다지급함으로써 (주)포스에너지를 지원하였으며, 에어컨 수리능력을 갖추지 않은 자회사 (주)포스콘에 대하여 에어컨 유지·보수에 대한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발주하고 (주)포스콘이 에어컨 수리전문업체에게 일괄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원도급금액과 하도급금액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경제상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포스콘을 지원하는 등 자회사에 대해 부당지원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7호 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당지원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1개 중앙일간지 전판에 5단×15cm의 크기로 게재하여 공표토록 함 ◎ 과징금 납부 : 3,629백만원

2001. 2. 27. 심결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월마트코리아(주)의 대규모 소매점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2000유거0641)	월마트코리아(주)는 (주)제이스인더스트리스, (주)대운산업, 슬레진저코리아(주), (주)아가방에 미리 특별한 가격, 의장, 형식 등을 정하여 상품을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이들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해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령을 거부하였고, 상품을 구입한 후 부당하게 상품대금을 감액하였으며, 자기의 상품을 구입하도록 강요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제이스에게 당사의 의사에 반하여 자기의 판촉활동에 소요되는 광고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불공정거래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2개 중앙일간지 전판에 5단×15cm 크기로 게재하여 공표토록 함 ◎ 과징금 납부 : 192백만원

사건 명	위 반 내 용	시 정 조 치
	<p>을 전가하고 자기 매장내 상품의 도난방지를 위해 상품에 부착하는 도난방지택의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가했으며, (주)호서어패럴 및 (주)디·에이치산업에게는 하도급거래 또는 직매입거래로 매입한 상품을 이들에게 반품하는 등 불이익을 강요한 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4호 위반</p>	
<p>(사)한국출판인회의의 재판매가격유지강요행위 및 종합서점상조회의 거래거절강요행위에 대한 건 (2000단체1479)</p>	<p>(사)한국출판인회의는 도서정가제를 확립하겠다는 취지에 2000. 10. 12. 강남출판문화센터 이벤트홀에서 179개 회원사의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도서를 할인판매하는 온라인 서점 및 할인매장에 대하여 같은 달 16일부터 도서의 직접 공급 및 도매서점을 통한 간접 공급을 중단하기로 결의하였고, 같은 해 10. 21.부터 도서정가제 위반 서점에 대한 도서공급을 중단하고 이들 유통업체에 자신이 지정한 감찰위원 파견 및 위반시 제재를 감수한다는 내용의 '도매서점 영업방침'에 합의하였으며, 종합서점상조회는 2000. 11. 9. 프레지던트호텔 일식당에서 교보문고 등 12개 회원사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모임을 갖고, 도서정가제를 지키지 않는 온라인 서점 및 할인매장에 도서를 공급하고 있는 문학수첩과 삼성출판사의 도서구매를 중단하고, 자신들의 매장에서 이들 출판사의 도서를 판매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며, 이 합의에 따라 이들에 대하여 도서구매 및 판매를 각각 중단하는 등 사업자단체가 나서서 개별사업자에게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거나 거래거절행위를 강요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1호 위반</p>	<p>◎ 재판매가격유지강요행위 및 거래거절강요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1개 중앙일간지 전판에 5단×12cm의 크기로 게재하여 공표토록 함</p>
<p>건설공제조합의 보증거래 약정서 및 보증규정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2000약제0811)</p>	<p>건설공제조합은 약관조항 중 보증거래약정서 제16조(관련법규) ①약정인 및 연대보증인은 이 약정서에서 정한 사항 외에 관련법규를 준수하기로 한다에서 "관련법규"에는 법률 이외에 계약당사자의 권리·의무가 포함되어 있는 자신의 제규정을 사실상 계약의 내용으로 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어 연대보증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고, 보증규정 제12조(연대보증) ①제11조의 약정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1인 이상) 또는 최다주식보유자가 개인자격으로 연대보증하여야 한다에서 자신이 전문경영인의 개인자격 연대보증 승계를 금지시키면서 위 조항에서 "법인의 대표자"를 개인자격 연대보증인으로 규정하는 것은 퇴임한 전문경영인에게는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약관규제법 제6조제2항제1호 위반</p>	<p>◎ 해당 약관조항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삭제 또는 수정토록 함</p>